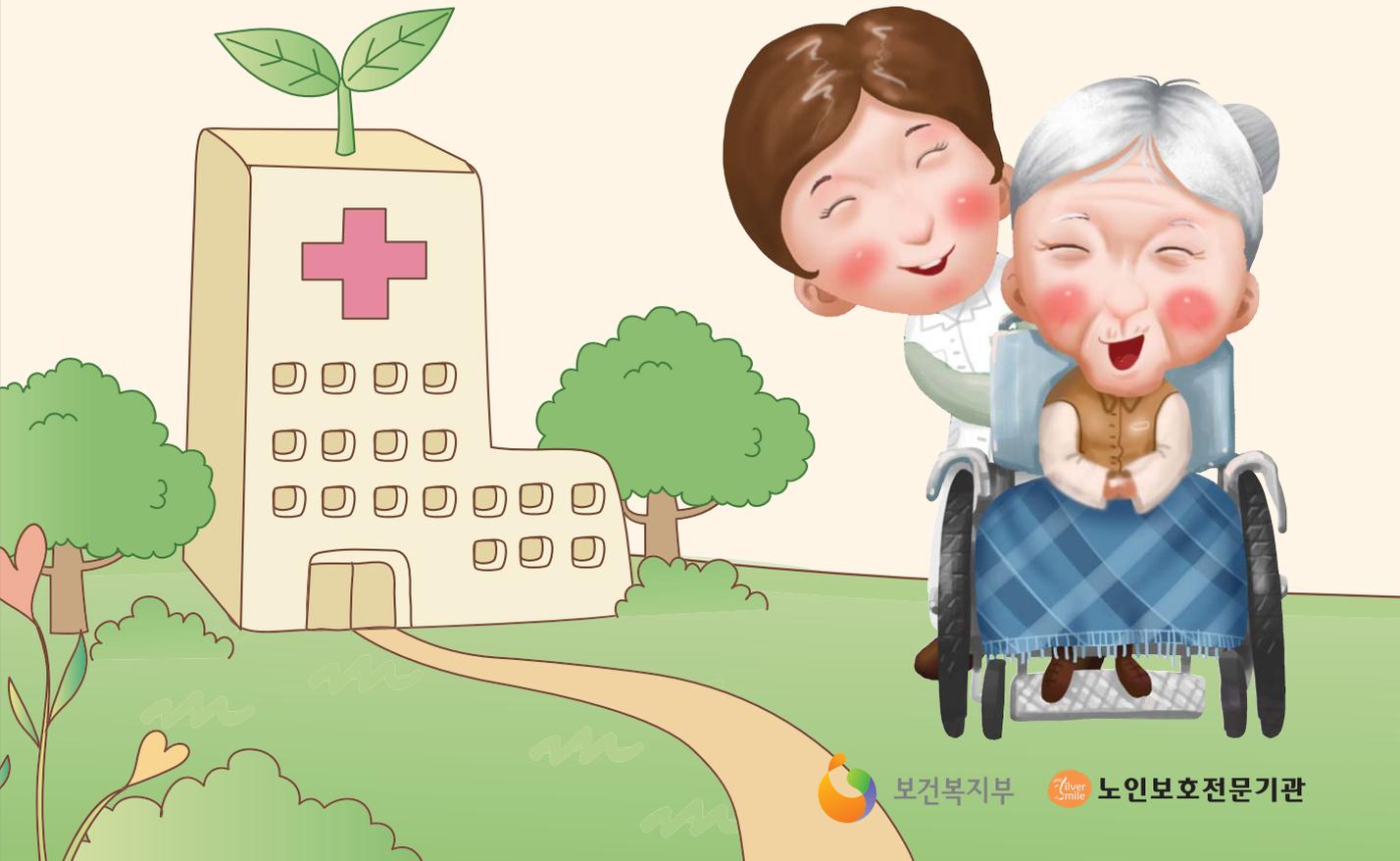


노인학대 NO! 학대신고 YES!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www.noinboho.or.kr

시설종사자 교육교재





하나. 노인학대,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는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한 당신! 바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과태료 3백만원!**

고민하는 당신을 돕기 위한 해결책이 이 안에 있습니다.

◎노인과 인권◎

Q.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권리

Q.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Q. 시설 종사자의 인권이란? ()

Q. 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이란? ()

괄호 안에 들어갈 답이 **다른** 내용일까요?

“시설 종사자와 시설 생활노인의 인권, 모두 보장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노인장기요양법 제1조). 그러나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생활시설 수가 증가되면서 이와 관련한 노인학대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 학대 추이 : ('08) 55건(2.3%) → ('13) 251건(7.1%), 4.5배 이상 증가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대부분의 시설은 노인인권보호에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요양보호사 김씨는 최근 시설장이 요양보호사 월급을 30% 이상 깎고 결원이 생겨도 충원하지 않아 어르신들을 돌보기가 너무 바쁘다.

매일 20명 가까이 돌보고도 하루 3교대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밤에는 침대에 치매노인들의 사지를 묶은 채 결박해 놓는다.

그로 인해 어르신들은 밤새 화장실에 가지 못해 그 자리에서 대변을 보기도 한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를 체크☑ 해봅시다.

-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거나 힘 또는 폭력으로 통제하여 타박, 골절 등의 피해가 생긴 적이 있다.
- 적법한 절차 없이 신체 일부 또는 전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 (억제대, 끈, 천, 수갑, 테이프 등)를 사용한 적이 있다.
- 제한된 공간에서 강제로 가두거나 격리한 적이 있다.
- 위험한 도구나 거친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 적이 있다.
- 생존유지에 필요한 식사, 음료, 약물 및 주사를 단절시킨 적이 있다.
-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한 적이 있다.
- 치료나 요양 목적 외의 노인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한 적이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하는 억제대가 노인학대에 해당하나요?

생활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을 경우, 또는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먼저 어르신의 심신의 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합니다. 또한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신체적 제한에 대한 통지를 하며, '비상응급시 각서'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한국노인복지중앙회(2013).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인권사례별 대응방안.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요양보호사 이씨는 시설에서 일한 지 3년째로 이제 제법 일에 능숙하다. 그러나 시간 내 일을 끝내려다 보니, 난폭하게 기저귀를 갈고 생활어르신들의 자질구레한 요구를 못들은 척하는 행동이 늘기 시작했다. 이를 본 어르신 중 황씨 할머니가 불만 섞인 잔소리를 털어놓자 버럭 화를 내며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시비를 걸고 난리야! 버릇없는 노친네 같으니라고.”라며 큰 소리를 치고 방을 나갔다. 이후 요양보호사 이씨는 더욱 황씨 할머니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를 체크☑ 해봅시다.

- 노인을 쳐다보지 않거나 말을 걸어도 무시하는 등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한 적이 있다.
- 사회활동, 종교활동, 취미여가활동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강요한 적이 있다.
- 노인의 가족, 친구 등과의 만남을 제한하거나 방해한 적이 있다.
- 다른 노인들이나 직원들 간에 공모하여 노인을 따돌린 적이 있다.
- 노인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모욕적인 말,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 적이 있다.
- 노인을 어린아이 다루듯 하며, 반말을 사용하거나 욕이나 화를 낸 적이 있다.
- '집으로 보내겠다', '밥 안주겠다', '죽게 내버려두겠다' 등의 위협과 협박을 한 적이 있다.
- 입소 및 퇴소, 물품 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해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행한 적이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 일손은 부족한데 어르신들은 나가고 싶어 하고 요구를 다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많은 외출 및 이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 치매어르신을 위해 안전하게 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출, 산책 등 이동 및 활동을 보조할 종사자나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Q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욕박지르거나 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의 억지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 서비스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어르신이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사자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 한국노인복지중앙회(2013).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인권사례별 대응방안.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입소한지 얼마 안된 최씨 할머니는 요즘 화장실에 가기가 두렵다. 최근 목욕탕 내 좌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도 남성 요양보호사가 할아버지를 입실 시켜 하의를 벗기고 목욕을 시켰다. 이후에도 최씨 할머니가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샤워시키기도 하였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학대를 체크☑ 해봅시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감 및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 적이 있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성추행을 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 적이 있다.
- 노인에게 음란물이나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지는 행위를 보게 한 적이 있다.
-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나 기저귀 찬 모습을 몰래 촬영한 적이 있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성적부위를 노출시켜 놓은 적이 있다.
- 노인에게 옷을 입히지 않거나 성적부위를 가리지 않은 상태로 둔 적이 있다.
-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어르신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을 시킨 적이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 서비스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치심을 줄여주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목욕서비스와 같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 어르신이 신뢰하는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대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 기저귀를 갈 때는 커튼이나 이동식 스크린, 수건 등을 이용하여 가려줌으로써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침상에서 실금을 한 경우, 신속한 뒤처리가 중요하며 어르신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수치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 한국노인복지중앙회(2013).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인권사례별 대응방안.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모 양로시설에서는 보호자인 아들이 시설이용비를 3개월째 지불하지 않자, 할아버지의 귀중품을 상습적으로 가로챘고 100여만원의 통장잔액을 동의 없이 무단인출했다.

게다가 할아버지께 아들에게 전화해서 시설이용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보호자 없이 퇴소시키겠다고 전하라고 강요했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학대를 체크☑ 해봅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갈취한 적이 있다.
- 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초노령연금)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 적이 있다.
- 노인에게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서비스 이용료를 과도하게 청구한 적이 있다.
- 시설 내 대체인력이나 일자리, 부업 등에 참여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지급한 적이 있다.
- 노인의 재산관련 문서(금융서류, 계약서, 위임장, 유언장 등)에 서명하거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변경한 적이 있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헌금, 공양, 후원금, 기부금, 물품강매 등)으로 노인의 재산 사용을 제한하거나 강요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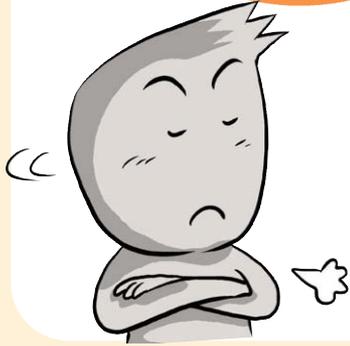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 **어르신이 돈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분실 위험이 있어 개인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걸 금지하는데 어떡하죠?**

어르신의 개인 소유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 다만 어르신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르신이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 한국노인복지중앙회(2013).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인권사례별 대응방안.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딸 N양은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고 집안사정도 여의치 않아서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다. 모처럼 어머니를 찾아온 딸은 어머니의 걸음걸이가 이상함을 느껴 알아보니,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가 요양원 내 남성 환자로부터 지팡이로 머리와 어깨, 옆구리 등을 수 차례 맞았던 것이다. 하지만 요양원 직원들은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병원 의료조치 없이 방치했다.

모 양로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정모 할머니는 식사도 거르고 약도 챙겨 먹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도움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설득 끝에 병원에 내방한 할머니는 만성적인 우울증을 보였으며 손목에 자해한 흔적도 발견되었다(자기방임사례).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임 행위를 체크☑ 해봅시다.

- 스스로 할 수 없는 식사, 배변, 목욕, 옷 입기 등 일상생활 도움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 노인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거나 의복·침구를 불결한 상태로 내버려 둔 적이 있다.
- 욕창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체위변경을 하지 않거나 의료조치를 소홀히 한 적이 있다.
-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먹다 남은(버린) 음식,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인 적이 있다.
- 냉·난방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감염, 안전사고, 화재 등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킨 적이 있다.
- 노인에게 필요한 기본 물품(의복, 침구, 위생용품 등) 및 보장구(휠체어, 이동식 좌변기 등)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 치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치료를 신속히 취하지 않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내버려 둔 적이 있다.
- 학대로 의심되거나 학대당하는 노인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적이 있다.
- 노인이 치료, 약 복용, 식사 등을 거부하여 생명에 위험한 상태를 목격하고 조치하지 않은 적이 있다(자기방임).
- 노인이 자살을 계획하거나 시도하는 것을 목격하고 조치하지 않은 적이 있다(자기방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 **어르신이 혼자 있고 싶다 하시는데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은 방임 아닌가요?**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독립된 공간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혼자 시간을 가지게 할 때에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 어르신은 건강상태 악화 및 자존감 저하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요구가 장기간 지속될 시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징후인지 아닌지 특별히 살펴야 합니다.

Q **야간에 한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께 폭력을 행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우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 어르신의 신속한 의료조치 및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시설장, 사무국장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한국노인복지중앙회(2013).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인권사례별 대응방안.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지난달까지 A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권모 할머니는 최근 병원 측의 신고를 통해 다른 시설로 가야 했다. 할머니의 아들이 병원비를 천만원이나 체납하고 연락을 두절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죽기 전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충격에 건강이 더 악화되었다. 추후에 연락이 닿은 아들은 그것이 학대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면, 바쁘다는 핑계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기 행위를 체크☑ 해봅시다.

- 시설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낸 적이 있다.
- 외부활동 후에 노인을 놔두고 온 적이 있다.
- 길을 잃거나 실종되었다는 이유로 노인을 찾지 않은 적이 있다.
- 노인을 타시설로 보낸 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적이 있다.
- 시설 입소 후 가족과 연락을 시설 측에서 두절시킨 적이 있다.
- 자녀들과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기존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 가족의 방문만 기다리는 어르신의 자녀들이 시설의 연락조차 거부하고 있는데 어찌죠?

종사자는 가족이 현재 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어르신께 설명드리고, 어르신이 보호자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어르신의 현재 상황을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동료어르신과의 교류와 소집단 모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Q 자녀가 부모를 요양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이 두절되면 노인학대 중 유기에 해당되는데 신고하면 체납된 입소비용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해결해주나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비용부담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간(해당 시설과 보호자)의 계약에 의한 사항이므로 입소비용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찾는 것은 본 기관의 업무를 벗어난 영역입니다.

- 입소비용 장기 체납이라는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한국노인복지중앙회(2013).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인권사례별 대응방안.

셋.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우리들의 자세 (시설 및 종사자의 역할)

노인관련 시설에서 학대행위자는 노인의 가족, 동료노인, 외부인뿐만 아니라 시설장과 직원도 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노인학대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의 역할

-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 하기
- 시설 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기
-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 보급하기
-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시설종사자의 역할

- 동료에 의한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 확보)
-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하지 않기
- 어떤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헐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하지 않기
-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노력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 최적의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은 종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시설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서로가 인격과 존중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
 - 종사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시설 내 노인들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종사자들의 인권교육 필요

** 보건복지부(201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넷. 시설 생활노인 학대사례 개입***

학대사례 발견 및 신고



- ▶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을 비치하여 노인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 취하기
- ▶ 누구든지 시설에서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의심되면 즉시 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등)

< 신고 이후 시설의 조치내용 >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됨
- ▶ 신고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 취하기
- ▶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

조사와 사정



- ▶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진행
- ▶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 학대행위자, 학대피해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
- ▶ 시설장, 사무국장은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 확인, 현장조사에 협조
- ▶ 학대사례 조사판정위원회 구성

학대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 시설장은 피해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적절한 서비스 계획,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고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계획 수립
- ▶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진행
- ▶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 취하기

평가와 사후조치



- ▶ 시설장은 학대사례의 진행 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제공 정도를 파악,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평가
- ▶ 사례평가의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운영 위원과 외부 학대조사판정위원(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포함)을 참석 시켜야 함
- ▶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재발여부 확인

*** 보건복지부(201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다섯.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위 조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장애인복지시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직원

신고방법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 **129** 로 전화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 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

신고내용

- 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 및 노인의 학대상황, 위급성에 대해 설명

신고자의 비밀보장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은 학대피해노인이 스스로 학대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때 노인을 돌보는 직무상의 책임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학대피해노인 없는 가정과 사회 조성에 기여합니다.

여섯.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소개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권익향상을 위한 업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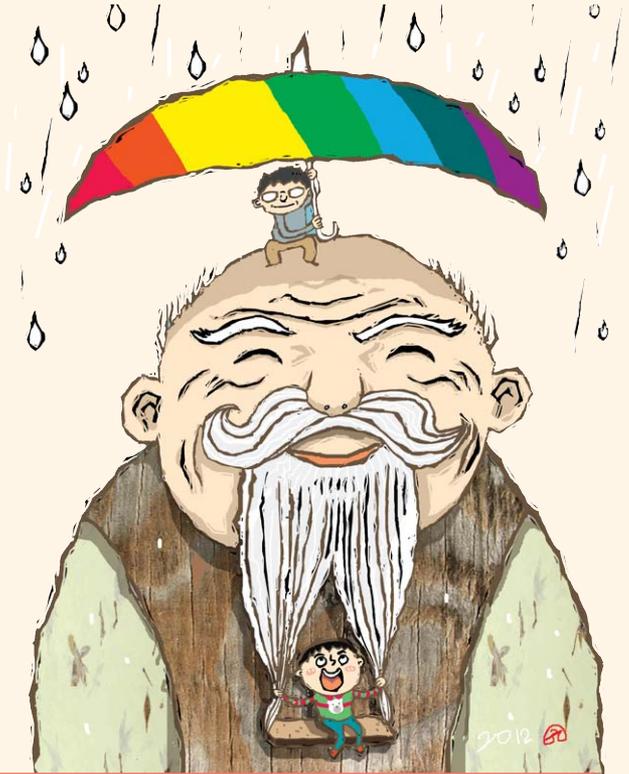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목적**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강화
- **입소대상** : 만 60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 **입소기간** : 보호기간 3개월(부득이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 연장)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협력기관입니다.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보장은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으로 가능합니다.

노인학대 없는 세상,
모든 세대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대받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킴이가 되어 주세요.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 **129**



Silver Smile이란?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탄생한 Silver Smile 브랜드는, 노인학대 없고 밝고 건강한 노인의 모습을 형상화 하고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는 진리를 바탕으로 노인이 웃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발행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주소 서울시 마포대로 182-10(공덕동 105-155) 성춘빌딩 2층

전화 02-3667-1389 팩스 02-2634-5023

홈페이지 www.noinboho.or.kr 인쇄발행 2015년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